

4. 法人稅法施行規則中 改正令

總理令 第492號 1995. 3. 30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항중 “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전출한 것”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통제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중 소분류상의 연금 및 공제업(기금조성사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제2조 제3항중 “합병등기를 한 날”을 “합병등기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납세지소관 세무서장”을 각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하며, 동조 제8항 전단중 “영 제37조의 2에 규정된 금융기관등”을 “영 제19조 제3항 각호의 법인 및 영 제23조의 3 제1항 제1호·제2호의 법인”으로, “당해 금융기관등”을 “당해 법인”으로 하고,

동조 동항 후단중 “이 경우 금융기관등의 본점”을 “이 경우 당해 법인의 본점”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4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3 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7항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를 “법 제59조의 2 제7항”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7조의2 제1항 본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기타 채권) 영 제19조 제2항 제3

호에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법인에 적용되는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을 말한다. 다만, 영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기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

제9조 제2항 본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동항 제5호중 “영 제37조의2 제1호 내지 제7호·제12호 및 제14호 내지 제16호”를 “영 제1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3호”로 하며, 동항 제7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 제1항중 “영 제23조의 3 제1항 제18호”를 “영 제23조의 3 제1항 제3호”로,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영 제23조의 3 제1항 제19호”를 “영 제23조의 3 제1항 제4호”로,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본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의 2 본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간이세금계산서를”을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영수증을”로 한다.

제11조 제1항 본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동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 제4호·제5호 나목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을 말한다.

제13조의 2 본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4조 본문중 “법 제17조 제2항”을 “영 제36조 제1항”으로, “인도한 날”을 “상품·제품 또는 생산품의 인도일”로 한다.

제14조의2를 제14조의5로 하고, 제14조의 2 내지 제1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장기할부조건의 범위등) ①영 제36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자산의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의 경우에는 첫회 할부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

제14조의3(작업진행률의 계산) ①영 제

36조 제1항 제7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라 함은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도급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작업진행률 = $\frac{\text{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text{총공사예정비}}$

②영 제3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도급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사업연도 말까지 수입계상액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한 총비용

제14조의4(손익의 귀속사업연도등) ①영 제3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19조 제3항 각호의 금융기관등이 수입하는 이자·보험료·부금·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이자등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 이자등은 제외한다.

②영 제3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

용함에 있어서 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의 외의 법인의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대통령령 제14467호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③영 제3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88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에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지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④영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판단하며, 계산착오등으로 거래금액의 일부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과 달리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으로 계산한다.

제14조의5(증전의 제14조의2) 제2항중 “전항에”를 “제1항에서”로,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연지급수입의 범위) 영 제37조 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입을 말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대금전액을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입방법에 의하여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2. 정유회사,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 수입업자가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의 일람불수입 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관리법상 연지급수입기간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연지급수입

제15조의2를 제15조의4로 하고,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기업회계기준적용의 배제) ①

영 제37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기장·비치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영 제37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50조에 규정하는 법인이 영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기 전에 금융기관 회계처리기준등에 따라 기간경과분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2. 제1호외의 법인이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을 제14조의4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사업연도의 수익의 계상한 경우

③영 제3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유가증권을 영 제37조의3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저가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따라 계상하는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은 영 제37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충당금으로 본다.

제15조의3(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범위)

①영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2. 증권관리위원회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기준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4. 은행법 또는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의

하여 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제15조의4(종전의 제15조의2)중 “제18조 제1항 제1호·동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 단서”를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3항 단서”로 한다.

제15조의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5(재고자산의 평가등) ①영 제37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류별·영업장별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자 하는 법인은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별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영업장별로 제조원가 보고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의 종목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다.

②영 제37조의4 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시가법”이라함은 재고자산등을 제15조의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영 제37조의3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저가법으로 유가증권을 평가하고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계상한후 유

가증권의 시가가 회복된 경우에는 제15조의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의 손금계산) ①영 제38조 제2항 제6호의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에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상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법인 또는 영 제42조에 규정된 법인외의 자에게 기부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부금으로 본다.

1. 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부자산가액을 영 제49조 제1항의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
2. 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
3. 기부자산의 신고내용연수 또는 사용계약기간중에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미상각잔액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범위) 영 제38조의2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라

함은 제15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상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말한다.

제17조 본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동조 제6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12호중 “갱생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갱생보호회”를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갱생보호공단”으로 하고, 동조 제24호중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및 그 회원단체”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하며, 동조 제29호중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을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한”으로 하고, 동조 제32조호중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를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및 사단법인 한국신장협회”로 하며, 동조 제33호중 “환경보전협회 또는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를 “환경보전협회,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회 및 환경운동연합”으로 한다.

제17조 제39호에 라목 내지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사단법인 대한에이즈협회

마. 사단법인 한국에이즈연맹

바. 사단법인 스톱에이즈운동본부

사.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아. 사단법인 해외동포모국방문후원회

자. 재단법인 한국범죄방지재단

제17조에 제41호 내지 제4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42.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

43.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에 사업비·시설비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4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설립한 에너지관리공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18조 제1항 본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8조 제3항 제1호중 “6월”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부지(외자도입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계류 및 동부품제조업이나 전자기기 및 동부품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공장용부지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1년”을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공장용부지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용 부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3년”으로 한다.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중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를 “별표 14”로 하고, 동호나목 본문중 “기타 건축물(이호 다목, 제6호)”를 “기타 건축물(제6호)로, “연면적”을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로, “5를”을 “1·2를”로, “작은 면적”을 “큰 면적”으로 한다.

제18조 제3항 제2호 다목을 삭제한다.

제18조 제3항 제3호 가목중 “1.1배”를 “1.5배”로 하고, 동호다목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며, 동호라목중 “1.1배”를 각각 “1.5배”로 한다.

제18조 제3항 제5호 가목중 “농업”을 “농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직물생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100분의 7”을 “100분의 3”으로 하고, 동목 단서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며, 동호나목 단서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제18조 제3항 제6호 나목(2)중 “직할시”를 각각 “광역시”로 하고, 동호라목중 “골프장업”을 “골프장업(관광진흥법에 의한

종합휴양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골프장업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8조 제3항 제9호 단서중 “스키장 또는 수영장”을 “스키장·수영장 또는 골프장”으로 하고, 동호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스키장·수영장 또는 골프장이 있는 경우 제6호 다목 단서 및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제18조 제3항 제1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중 “2년이 경과되지”를 “2년(나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경과되지”로 하고, 동호 가목중 “부동산매매업”을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동호 나목중 “주택신축판매업”을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주거용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18조 제3항 제18호중 “하치장용 토지(건축법에 의한 건축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를 “하치장용 토지”로 한다.

제18조제3항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염전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1

헥타르당 연간 소금생산량이 25톤에 미달하는 부동산. 이 경우 연간 소금생산량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평균소금생산량에 의할 수 있다.

제18조 제3항 제22호중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으로, “1.1배”를 “1.5”로 한다.

제18조 제4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1호의2를 삭제한다.

1.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그 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제18조 제4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물이 소실·철거되거나 무너짐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소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는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다만, 제3항 제1호 단서 및 제12호 단서(동호 가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부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

부터 3년(제3항 제12호 다목의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제18조 제4항 제5호중 “2년”을 “2년(제3항 제1호 단서 및 제12호 나목·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부지등의 경우는 3년)”으로 하고, 동항 제6호중 “대지”를 “대지 또는 분양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 또는 환매한 토지”로 한다.

제18조 제4항 제11호 본문중 “영 제37조의2”를 “영 제19조 제3호 각호”로 하고, 동항 제13호중 “1.1배”를 각각 “1.5배”로 하며, 동항 제14호중 “1.1배”를 “1.5배”로 하고, 동항 제15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제4항 제17호중 “제3항 제1호”를 “제3항 제1호 및 제12호(동호가목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단지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원형지로 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제18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제3항 제1호 및 제12호(동호가목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

우 제3항 제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제산의 기산일은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제한이 해제된 날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날

2. 제4항 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 제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그 기간에 건축허가 또는 착공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제18조 제7항 본문중 “취득한 날”을 “취득한 날(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제산의 기산일)”로 하고, 동조 제8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법 제59조의2 제7항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
4. 토지의 경우에는 법 제59조의2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동호 본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개시일 현재 고시된 지가로 한다.)

제18조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공장면적률 및 용적률은 건축허가 또는 공장등록 당시에 적용되는 기준공장면적률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건축허가 또는 공장등록후에 기준

공장면적률등이 변경됨에 따라 당해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공장면적률등에 의한다.

제18조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물에는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2. 법률 제4212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

제18조 제18항중 “영 제43조의2 제9항 제9호”를 “영 제43조의2 제9항 제10호”로,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동조 제19항 본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하며, 동조 제21항 본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8조 제22항 본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동조 제23항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며, 서울특별시 광진구등 9개자치구설치 및 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지역에 설치·편입된 군지역은 광역시지역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8조의2 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 제2항중 “영 제43조 제1항 제9호”를 “영 제43조 제1항 제1호”로,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하며, 동조 제3항중 “영 제43조 제1항 제10호”를 “영 제43조 제1항 제2호”로,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동조 제5항 및 제9항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하며, 동조 제7항 본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한다.

제18조의3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8조의4 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중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장”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하며, 동조 제3항 전단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8조의5 본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9조 삭제한다.

제20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영 제47조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21조 제1항중 “영 제47조”를 “영 제47조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영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제1항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46조 제3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2(해외거래의 시가 산정방법)

①영 제46조 제4항 제1호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내국법인이 국외의 특수관계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와 거래한 재고자산의 시가는 당

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당해 재고자산과 동종의 재고자산을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에 매매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거래와 독립된 사업자간에 거래한 재고자산의 품질, 거래단계(소매 또는 도매단계), 거래수량, 거래시기 기타 거래조건 등에 차이가 있고, 또한 그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거래가격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의 차이를 조정한 후의 가격을 시가로 한다.

2. 재판매가격법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당해 재고자산을 거래하고, 동재고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다시 동재고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자가 거래한 당해 재고자산의 시가로 한다.

3. 원가가산법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에 재고자산을 판매한 자가 동 재고자산을 취득하거나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동 판매자의 통상의 이윤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당해 재고자산의 시가로 한다.

②영 제46조 제3항 제1호 라목에서 “총

리량이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이익분할법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자가 당해 재고자산거래로부터 얻은 총 영업이익을 다음 각목에서 예시한 거래당사자들간의 상대적인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고 이와 같이 배분된 이익을 기초로 계산된 거래가격을 동 재고자산의 시가로 한다. 다만, 이익의 배분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이익배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외부시장자료 또는 기타 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 재고자산의 제조·매입·판매 등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을

나. 재고자산의 개발을 위하여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사용된 자산가액, 부담한 위험정도

2. 제1호에 의하여 시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 관념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한다.

③제2항 각호의 방법은 제1항 각호의 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의3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6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26조 제2항중 “준용하고, 시설대여기간은 시설대여업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기간으로 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설대여기간은 임차자의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시설대여업법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로 하며, 동항 산식중 “(취득가액-영 제55조에 규정한 잔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동조 제5항 산식중 “(상각충당금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 상각한도초과액-영 제55조에 규정하는 잔존가액)”을 “(상각충당금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 상각한도초과액)”으로 한다.

제2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시설대여회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 영 제5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을 영 제48조 제3항에 규정하는 감가상각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5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고정자산의 내용연수등) ①영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별표 1 및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건축물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고 건축물외의 고정자산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 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③영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④영 제49조 제4항 본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⑤영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중 법인이 선택한 가동률을 말한다.

1. $\frac{\text{당해 사업연도 실제생산량}}{\text{연간 생산가능량}} \times 100$
2. $\frac{\text{연간 작업일수}}{\text{연간 작업가능일수}} \times 100$

⑥영 제49조 제4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보급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⑦영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신청서 접수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영 제49조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에 감가상각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감가상각내용연수를 적용한다.

⑨시험연구용자산 및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별표 3 및 별표 4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⑩고정자산의 상각비율은 별표 5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의 제목을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중 “취득가액에서 영 제55조에 규정한 잔존가액을 공제한 잔액(기초가액)”을 각각 “취득가액”으로 하며,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27조 제7항의 규정은 영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

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영 제50조 제6항 제1호 산식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신고내용연수(영 제49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0조 및 제3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감가상각방법) ①영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별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무형고정자산 및 시험연구용자산의 경우는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방법으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영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자산명세서는 별지 제6-6호서식 부표 2에 의한다.

③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 5에 상당하는 금액이 1,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2조(상각자산의 종류) ①영 제54조 제1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은 별표 3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에 규정된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②영 제56조 제6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등을 말한다.

제3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가액이 300만원미만이거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총당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및 3년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이를 수익적 지출로 할 수 있다.

제34조중 “장기할부가액”을 “장기할부가액(영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1년미만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계산) 영 제58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법인의 상각액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영 제48조 제1항에 의한 상각범위액

$$\frac{\text{당해 사업연도 월수}}{12}$$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양도자산의 감가상각총당금등 조정) ①영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총

당금은 내용연수별 감가상각총당금 누적액에서 이를 차감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에 대한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②영 제63조 제3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전체가액은 양도한 자산이 속하는 내용연수별 자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취득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잔존가액의 감가상각) ①대통령령 제14468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가액의 감가상각이 개시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당해 법인이 선택한 상각기간중 잔존상각기간동안 균등분할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②대통령령 제14468호 법인세법시행령중 개정령 부칙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존가액의 감가상각이 종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000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대통령령 제14468호 법인세법시행령중 개정령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가액의 감가상각비의 계산에 관하

여는 별지 제6-6(5)호서식에 의한다.
제43조중 “법 제24조의3 제2항·법 제25조 제3항”을 “법 제25조 제3항·영 제78조의2 제2항”으로 한다.

제44조 제2항 산식중 “법 제24조의 3 및 다른 법률”을 “다른 법률”로 한다.

제45조 제3항 제13호중 “제6-6(3)호 서식의 감가상각비등 조정명세서 및 제6-6(4)호서식의 특별감가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를 “제6-6(7)호 서식의 감가상각비등 조정명세서”로 하고, 동항 제32호 및 동조 제8항 제2호중 “고유목적사업지급준비금조정명세서”를 각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로 하며, 동조에 제11항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영 제38조의 2 제5항에 규정하는 외화자산·부채평가명세서는 별지 제6-5호 서식에 의한다.

⑫영 제124조의10 제3항에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는 별지 제65호서식에 의한다.

제50조 본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영 제37조의2”를 “영 제19조 제3항”으로 하며, 동조 제8호·제9호·제11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의2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4항중 “환급받고자”를 “환급 또는 충당

받고자”로, “별지 제58호서식의 신탁재산 용원천징수세액납부 및 환급계산서”를 “별지 제58호서식의 신탁재산분 법인세원천세액 환급(충당)계산서”로 한다.

③영 제100조의5 제2항 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신탁회사(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를 포함한다)로서 제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일괄계산 납부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58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59조의3 제1항 본문중 “영 제124조의2 제6항”을 “영 제124조의2 제14항 단서”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생산자물가상승률”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9조의5 및 제59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5(취득가액등의 안분계산) ①영 제124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안분계산은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각각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당해 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 각각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가액의 구

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각각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제산한다.

제59조의6(기준시가의 산정) ①영 제124조의5 제10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전기의 기준시가) × $\frac{\text{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text{기준시가조정월수}}$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전기의 기준시가”와 “기준시가 조정월수”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의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의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를 말하며, 전기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나. 기준시가조정월수

전기의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취득당시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며,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가 기준시가조정월수보다 많은 경우에

는 기준시가조정월수를 당해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로 본다.

③제1호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1.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토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 상황등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전기의 기준시가

2.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건물

전기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 지수 및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

④취득당시 영 제124조의5 제7항·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전기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이 경우 기준시가조정월수는 12월로 하고, 전기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전기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전기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없는 건물의 경우에는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각각 전기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본다.

전기의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
 $\times \frac{\text{전기의 과세시가표준액}}{\text{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조정월수 및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한다.

⑥영 제124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종류·규모·분양가액 및 취득·양도당시의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⑦영 제124조의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거나 평가액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1주당 가액의 평가

1주당 가액 =
 $\left(\frac{\text{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text{발행주식총수}} + \frac{\text{1주당 순손익액}}{100\text{분의 } 15} \right) \div 2$

나. 가목의 산식에서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하 이 항에서 “양도일등”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접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사업개시·폐업 등의 사유로 양도일등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6월미만

인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이 경우 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1. 당해 법인의 동일한 사업연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기준시가 +

$\left(\frac{\text{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기준 시가} - \text{직전사업연도 기준 시가}}{\text{양도자산 보유월수}} \right)$

$\times \frac{\text{양도자산 보유월수}}{\text{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월수}}$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제159조의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9조의8(환지에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text{환지예정(교부)면적} \times \text{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text{종전 토지의 면적} \times \text{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text{환지예정(교부)면적} \times \text{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text{환지예정면적} \times \text{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환지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가. 양도가액
 $\text{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 \times \text{환지청산금 수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text{종전 토지의 면적} \times \text{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times \frac{\text{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text{권리면적}}$

2. 환지예정지구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text{환지예정(교부)면적} \times \text{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text{종전 토지의 면적} \times \text{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times \frac{\text{권리면적} - \text{환지청산금액에 상당하는 면적}}{\text{권리면적}}$

③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경우에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62조 제1항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8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영 제49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또는 변경승인신청서와 영 제50조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43호 서식에 의한다.

제68조 제6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7항중 “별지 제3(1)서식 부표 1을”을 “별지 제3

(1)호서식 부표 5를”로 하고, 동조 제10항중 “영 제85조 제9항”을 “영 제37조의3 제4항”으로 하며, 동조 제12항중 “대표자 변경신고서”를 “대표자변경신고서와 법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신청서”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7]기관투자자의 범위의 2.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제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8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

[별지 제3(1)호서식(갑)] 작성요령중 1.과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상세액(㉓)란

법인세법·조세감면규제법등에 의한 공제감면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의하여 감면 구분별(㉑)로 기입합니다. ㉒란은 [별지 제3(1)호서식 부표2]의 ㉑란의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2. 공제세액(㉔)란

법인세법·조세감면규제법 및 외자도입법등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3(1)호서식 부표1, 2, 3, 4, 5]에 의하여 계산된 공제세액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의 범위안에서

공제순위(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 따라 감면구분별(㉑)로 기입하고, ㉒의 란은 [별지 제3(1)호서식 부표2]의 감면세액(㉕)의 합계금액을 기입하며, ㉓의 공제세액란은 [별지 제3(1)호서식 부표3]의 ㉑란의 공제세액합계액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5호의2 서식(을)] 작성요령 1.의 산식 분모중 “㉗”을 “㉘”으로 한다.

[별지 제6-2호서식] 작성요령중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㉙이자율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 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6-4호 서식(을)] 작성요령중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㉚신용카드사용금액:별지 제55호서식(1)의 ㉛과 ㉜의 일반접대비 합계액중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6-6(1)호서식]중 “㉝용인한도액(㉞ $\times\frac{90}{100}$)”을 ㉟용인한도액(㊱=㉞)”으로, “㊲용인한도액(㊳ $\times\frac{90}{100}$)”을 “㊴용인한도액(㊵=㊳)”으로 한다.

[별지 제6-6(2)호서식] 작성요령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㊶, ㊷란에는 1995년 1월 1일 이후 중

료하는 사업연도부터 “0”을 기입하고, ⑰란에는 1995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의 상각액을 기입하며, 그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0”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6-6(3)호서식] 작성요령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⑱란에는 1995년 1월 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는 1994년 12월 31일까지의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누적액을 기입하고, ⑲란에는 1995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의 상각액을 기입하며, 그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0”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6-6호서식 부표]를 [별지 제6-6호서식 부표1]로 한다.

[별지 제6-10호서식] 및 동서식 작성요령 4. 및 5.중 “최종매입원가법”을 각각 “선입선출법”으로 한다.

[별지 제6-14호서식(병)] 작성요령중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작성대상부동산

당해 사업연도중에 보유한 다음 각목의 부동산에 대하여 작성하되,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는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부동산
나. 사업연도중에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
다. 부동산 보유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부동산
[별지 제10(1)호서식]의 ⑦근거법 조항란 중 “법 제48조 제1항”과 “법 제48조 제2항”을 각각 “법 제40조”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의 제목중 “해외특수거래자”를 “해외특수관계자”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부표5] · [별지 제6-6(5)호서식] [별지 제6-6(6)호서식] · [별지 제6-6(7)호서식] · [별지 제6-6호서식 부표2] · [별지 제65호 서식] · [별지 제65호서식 부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1)호서식(을)] · [별지 제3(1)호서식 부표1] · [별지 제3(1)호서식 부표2] · [별지 제3(2)호서식] · [별지 제6-1호서식] · [별지 제6-3(2)호서식] · [별지 제6-3(4)호서식] · [별지 제6-4(4)호서식(갑)] · [별지 제6-5호 서식(을)] · [별지 제6-14호 서식(을)]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10(3)호서식] · [별지 제43호서식] · [별지 제48호서식] · [별지 제49호서식] · [별지 제55호서식(1)] · [별지 제57호서식(갑)] · [별지 제58호서식] · [별지 제60호서식(갑)] · [별지 제60호서식(을)]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5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공익성 기부금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4조(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의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적용례) 제26조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시설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조 제6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95년 1월 이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1회에 한하여 법인세 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세무서장의 승인없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감가상각방법 변경신고서를 제출

- 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작업진행률의 계산에 대한 적용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6조(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59조의5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7조(정기예금이자율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이자율을 정하기 전까지는 100분의 9를 적용한다.
- 제8조(생산자 물가상승률에 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 종전의 영 제124조의2 제6항(19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종전 제59조의 3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27조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4년 (3년~5년)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물탈조, 기타조의 모든 건축물
3	40년 (30년~5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축물

1.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2호 및 제 1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지방세 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하며, 당해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가 포함됨.
2. 복합구조건축물의 경우는 주된 구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차량운반구중 운수업외의 업종에 사용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하여는 각각 별표2의 수상운송업과 항공운송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함.
3. 구분2와 구분3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건축물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 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7년~13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음.

[별표 2]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27조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1	4년 (3년-5년)	농업, 수렵업 및 임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01. 농업, 수렵업 및 관련 서비스업 다만, 과수의 경우는 구분5(12년-20년)를 적용한다. 02. 임업·벌목 및 관련 서비스업 10. 석탄광업 11. 원유, 천연가스채취 및 관련서비스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 매체복제업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45. 건설업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 분 류	중 분 류
		도·소매업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 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 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50. 자동차판매·수리 및 차량연료소매업 51. 도매 및 상품중개업 52. 소매 및 소비용품수산업(자동차제외)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도시간 철도운송업(601) 및 구역 내 철도운송업(60211)은 구분5(12년- 20년)을 적용한다. 65. 금융업 66. 보험 및 연금업 67.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70. 부동산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임대용 자 산은 임차자 기준으로 업종분류) 72.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용관련업 73. 연구 및 개발업 74.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 7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0. 교육서비스업 8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90.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91. 회원단체 92.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93. 기타 서비스업 95. 가사서비스업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2	6년 (4년-8년)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제조업	99.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18. 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다만, 살균, 살충제 및 기타 농업용 화학 제품 제조업(2421)과 의약품, 의료용화 합물 및 생약제제제조업(2423)은 구분1 (3년~5년)을 적용한다.
		숙박 및 음식점업 운 수, 창고 및 통신업	55. 숙박 및 음식점업 63.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64. 통신업
3	8년 (6년-10년)	어업 광업	05.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서비스업 12. 우라늄 및 토륨광업 13. 금속광업 14. 기타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15. 음식료품제조업 17. 섬유제품제조업 다만,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1712)은 구분2(4년~8년)를 적용한다. 19.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제조업 다만, 가죽제조업(1911)은 구분2(4년-8 년)를 적용한다. 20.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외)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4	10년 (7년-13년)	제조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2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7. 제1차 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제조업(기계 및 장비 제외) 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제조업 30. 사무, 계산 및 회계용기계제조업 다만,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제조업 (3001)은 구분1(3년~5년)을 적용한다. 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변 환장치 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 제조업 37.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16. 담배제조업 61. 수상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61104)은 구분5 (12년~20년)를 적용한다. 62. 항공운송업
5	16년 (12년-20년)	전기, 가스 및 수도사 업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다만,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스제조 및 공급업(40209)은 구분3(6년~10년)을 적용한다. 41. 수도사업

1. 이 내용연수표는 [별표1]의 적용을 받는 자산 및 토지를 제외한 모든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적용함.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계장비 및 소비

용품임대업(중분류 71)의 임대용 자산에 대하여는 임차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내용연수범위를 선택 적용함.

[별표 3]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제27조 관련)

자 산 범 위	자 산 명	내용연수
1.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발견을 위한 실험연구시설	(1) 건물부속 설비	5년
2.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응용하는 연구시설	(2) 건축물	
	(3) 기계장치	
3. 신제품이나 신기술과 관련된 시제품, 원형, 모형 또는 시험설비등의 설계, 제작 및 시설을 위한 설비	(4) 광학기기	3년
4.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공구, 기구, 금형 등의 설계 및 시험적 제작을 위한 시설	(5) 시험기기	
	(6) 측정기기	
5. 직업훈련용 시설	(7) 공구	
	(8) 기타 시험연구용 설비	

1. 시험연구용 자산중 조세감면규제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을 이미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이 내용연수표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2. 법인이 시험연구용자산에 대하여 내용

연수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1]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또는 [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별표 4]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제27조 관련)

구분	내용연수	무 형 고 정 자 산
1	5년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	10년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3	20년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4년	50년	댐사용권

[별표 5] 고정자산의 상각율표(제27조 관련)

내용 연수	정액법에 의한 상 각 율	정률법에 의한 상각율	
		10퍼센트 잔존가액	5퍼센트 잔존가액
년	할분리	할분리	할분리
2	500	684	777
3	333	536	632
4	250	438	528
5	200	369	451
6	166	319	394
7	142	280	349
8	125	250	313
9	111	226	284
10	100	206	259
11	090	189	239
12	083	175	221
13	076	162	206

내용 연수	정액법에 의한 상 각 울	정률법에 의한 상각율	
		10퍼센트 잔존가액	5퍼센트 잔존가액
년	할분리	할분리	할분리
14	071	152	193
15	066	142	182
16	062	134	171
17	058	127	162
18	055	120	154
19	052	114	146
20	050	109	140
21	048	104	133
22	046	099	128
23	044	095	123
24	042	092	118
25	040	088	113
26	039	085	109
27	037	082	106
28	036	079	102
29	035	076	099
30	034	074	096
31	033	072	093
32	032	069	090
33	031	067	087
34	030	066	085
35	029	064	083
36	028	062	080
37	027	060	078
38	027	059	076
39	026	057	074

내용 연수	정액법에 의한 상 각 율	정률법에 의한 상각율	
		10퍼센트 잔존가액	5퍼센트 잔존가액
년	할분리	할분리	할분리
40	025	056	073
41	025	055	071
42	024	053	069
43	024	052	068
44	023	051	066
45	023	050	065
46	022	049	064
47	022	048	062
48	021	047	061
49	021	046	060
50	020	045	059
51	020	044	058
52	020	043	056
53	019	043	055
54	019	042	054
55	019	041	054
56	018	040	053
57	018	040	052
58	018	039	051
59	017	038	050
60	017	038	049

* 비교: 사업연도가 6월인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2를 곱한 숫자를 내용연수로 보아 상각율을 적용하고, 그밖의 기간을 사업연도로 하는 경우에는(12÷사업연도 해당월수)에 해당하는 숫자를 곱한 숫자를 내용연수로 보아 상각율을 적용함.

[별표 14] 공장입지기준면적(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 관련)

1. 공장입지기준면적

$$\text{공장입지기준면적} = \text{공장건축물 연면적} \times \frac{100}{\text{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2. 적용 요령

가. 공장건축물 연면적은 당해 공장의 경제구역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의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나.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한다.

다. 1개의 단위 공장에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하여 이를

합한 면적을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보며, 명확한 업종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라.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중 당해 공장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인 토지부분(그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은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마.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및 6미터 이상의 도로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바. 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 저수지 또는 침전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사.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별지서식 생략)

◇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비용과 행정비용을 대폭 줄이기 위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내용연수 분류를 대폭 간소화하며, 경제행정규제 완화시책의 일환으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납부할 수 있는 대상법인에 증권회사와 증권투자신탁회사를 추가함으로써 각 지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함(영 제2조 제8항).
- 나. 과세소득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에 발명진흥기금 및 과학관등에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등을 추가하도록 함(영 제17조).
- 다. 공장신축용지등의 비업무용 관정유예기간을 종전의 1년 또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주차장용 토지등의 업무용 인정범위를 최저 보유면적의 1.1배에서 1.5배까지 확대하며, 사용제한 토지의 경우 사용제한기간동안은 비업무용에서 제외하고 사용제한 해제일부터 일반유예기간을 적용하는 등 비업무용부동산의 관정기준을 일부 조정함(영 제18조).
- 라. 특수관계인에게 사택등을 임대할 때 종전에는 사택의 정상가액에서 전세금·보증금을 뺀 차액의 12퍼센트를 적정임대료로 보았으나 경제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앞으로는 동 차액의 10퍼센트를 적정임대료로 보도록 함(영 제22조 제3항).
- 마. 종전에는 수익적 지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장부가액의 5퍼센트 미만인 유지·수선비등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영 제33조 제2항).
- 바. 종전에는 유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 분류를 591개로 세분화하였으나 앞으로는 8개 그룹으로 대분류하여 납세비용과 행정비용을 대폭 줄이도록 하고,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단축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영 별표 1 내지 별표 3).
- 사.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세제상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추가함(영 별표 7).

〈법제처 제공〉